

日帝下 舍音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目 次>	
I. 問題의 所在	4. 舍音의 報酬
II. 舍音의 基本性格	III. 舍音의 地域的 分布
1. 舍音의 意義	IV. 舍音存立의 舍蓄
2. 舍音의 任務	V. 要 約
3. 舍音의 選定	

I. 問題의 所在

日帝下 土地調査事業 이후의 土地所有制度面에서의 特徵은 大地主의 形成과 더불어 小作農의 零細的 土地保有가 具體化되었다는 데 있다.

더우기 당시의 土地所有關係에 있어서 大地主의 集中度는 日本人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높았으며 그들은 흔히 實質的 企業經營의 形態로서 農場經營方式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大地主는 흔히 都市 또는 日本에 居住한 不在地主로서 土地管理人 즉 舍音을 통하여 小作人을 搾取하되 政界나 產業界에서 그의 威勢를 떨치고 있었다.

물론 土地의 兼併은 사실상 日本人 地主에 한하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日帝下 韓國人의 寄生的 大地主 또한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 의한 土地併呑의 方法이나 小作農의 收取方式을 보건대 그것이 日本人의 경우와 大同小異하였다. 다만 그후 日本帝國主義의 그들에 대한 政治的 및 經濟的 壓迫이 加重됨에 따라서 一方的인 負擔은 적지 않았거니와 그의 實質이 즉시 舍音을 통하여 小作農에게 轉嫁되었던 事實을 우리는 注視하게 된다.

이와 같은 大土地所有制下에서 地主와 小作人의 中間介在者이며 土地管理者인 舍音의 存立은 土地管理上 부득이한 것이었으나 舍音이 행한 小作農에 대한 無秩序하고도 無謀한 橫暴는 물론 農事管理上 및 農業發展上에 하나의 커다란 制約條件이 되어 있었고 그것의 農業面에 미치는 影響은 실로 큰 것이었다.

이에 舍音에 대한 性格解明이 이미 體系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우리의 처지임에도 不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拘하고 이에 대한 歷史的 定立이 이룩되어 있지 못한 것이 現實이다. 이에 本研究는 위와 같은 重要性에 비추어 地主와 小作人間的 中間介在者이며 土地管理者인 舍音에 대한 性格을 究明하고 그를 歷史的으로 定立함에 目的을 둔 것이다.

II. 舍音의 基本性格

1. 舍音의 意義

朝鮮에서는 地主의 委任을 받아서 土地를 管理하는 者를 舍音(마름)이라 하고 日本에서는 支配人, 管理人, 家守, 代納人 혹은 作番頭, 野番頭, 小作頭, 頭職이라 呼稱되었으며 中國에서는 莊頭, 總佃戶, 大佃戶라 불리어지고 있었다.⁽¹⁾

그렇지만 舍音이란 言語는 韓國全域를 통하여 例外없이 普遍的으로 使用되어진 것은 아니다. 咸鏡道, 平安道地方에서는 舍音이란 말이 별로 使用되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咸鏡道에서는 舍音에 相當하는 것을 農耨, 平安道에서는 首作人 또는 大宅人이라 呼稱하였다.⁽²⁾

慶尙南道 內務部의 舍音에 관한 調查報告⁽³⁾에 의하면 舍音에는 都舍音, 該舍音의 兩者가 存在하고 있었다. 前者는 地主로부터 직접 土地管理를 委任받는 者이고 後者는 都舍音으로부터 土地의 管理를 委任받은 者로서 이를 該舍音이라 불렀다.

그밖에 舍音에는 여러가지 種類와 呼稱이 있었다. 一般的으로 管理小作地가 많은 경우에는 一定面積을 數人의 舍音으로 하여금 分割管理케 하되 이를 統轄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都舍音이 있었고 이 경우 都舍音下에 所屬되는 舍音을 又舍音, 中舍音, 小舍音, 該舍音이라 하였던 것이며 都舍音을 本舍音, 大舍音, 上舍音이라 呼稱하였다.⁽⁴⁾

더우기 日帝下 大地主는 大部分이 京城에 居住하며 별도로 小作人 가운데 信用있는 者를 嚴選하여 監督하게 하였으며 이를 舍音이라 일컬었고 舍音은 大地主에 있어서는 一村에 1명 내지 數名을 任命하고 항상 다른 小作人의 勤怠를 調查하게 하고 또 秋收에 있어서는 小作料決定에 參與하게 하여 都舍音을 두고 舍音을 監督하게 하였다. 都舍音은 한 地主에 1명 내지 2명이었다.⁽⁵⁾

이로부터 大土地所有制가 盛行되고 不在地主의 傾向이 顯著化되어 있는 日帝下의 農業에

(1)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1933, p. 138.

(2)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上), p. 614.

(3) 慶尙南道 內務局, 『舍音に關する調査』, p. 2.

(4) 久間健一, 前掲書, pp. 138—139.

(5)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1904, p. 154.

서는 小作地管理制度, 換言하면 舍音制度는 重要な 農村制度임과 동시에 小作制度 가운데 하나의 求心點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小作問題가 심각하게 됨에 따라서 舍音制度가 齎來한 弊害는 우리의 注目對象이 되어 있거니와 舍音은 地主와 小作人의 中間에 介在하여 地主를 代身하는 權勢를 惡利用하여 小作人에게 苛斂誅求와 橫奪을 極甚하게 하였으니⁽⁶⁾ 舍音은 실로 農民搾取의 癩的 存在가 아닐 수 없었으며 그것은 村落의 總督 혹은 村落의 惡鬼라는 呼稱에서 適切히 徵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舍音의 任務

舍音은 다름아닌 不在地主의 土地管理者이며 小作人의 中間搾取者인 存在이다. 그들은 때때로 地主를 籠絡하기도 하였지만 地主의 威勢를 빌어 교묘한 手段으로 小作人을 弄奸함이 一般的이었다.

이와 같은 舍音의 中間搾取者의인 性格은 舍音의 任務內容에서 充分히 考察된다.

1921年 當時의 舍音의 任務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 ① 小作料收取, 保管, 運搬 및 賣却
- ② 納稅의 代理
- ③ 小作人의 監督
- ④ 土地의 修繕
- ⑤ 作物狀況의 報告

또한 1922年 當時의 舍音의 任務⁽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주된 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土地事務에 관한 地主代理
- ② 小作人의 監督
- ③ 小作人의 黜陟
- ④ 小作料의 査定, 徵收 및 保管
- ⑤ 種子의 保管
- ⑥ 地主와 小作人間의 連絡

舍音의 任務는 地主와의 約定에 의하여 그 範圍가 다양하게 정하여져 있었으나 보통 당시의 舍音의 基本的 任務로서는 ① 小作料의 收納, 保管 및 販賣, ② 小作人의 監督, ③ 小

(6) 細井肇譯, 『牧民心書』, p. 154.

(7) 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 282.

(8) 朝鮮農會, 前掲書, pp. 325—326.

作地の 管理, ④ 租稅代納 등이었다. (9)

大地主 또는 遠隔地에 있는 地主는 舍音을 각지에 配置하고 小作地の 管理에 任하게 하며 舍音은 地方에 따라 大宅人 또는 農幕主人 등이라 稱하고 平安道에 있어서는 小作人 중 信用있는 者로 하여금 舍音의 任務에 當하게 하고 이를 首作人이라 불렀다. 그들에 있어서의 任務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0)

- ① 小作料의 收取, 管理 및 賣却
- ② 小作人의 監督

表 1 舍音數, 1人當 管理土地面積 및 小作人數(1922年)

道 別	舍 音 數	1 人 管 理 土 地 面 積			小 作 人 數		
		最 大	普 通	最 低	最 多	普 通	最 少
京 畿 道	韓國人 4,591	300.0 ^町	20.0 ^町	1~2.0 ^町	600 ^人	50 ^人	5~6 ^人
	日 人 6	—	—	—	—	—	—
忠 清 北 道	韓國人 4,143	100.0	12.0	0.5	587	20	3
	日 人 —	—	—	—	—	—	—
忠 清 南 道	韓國人 2,169	500.0	17.2	1.0	900	50	5
	日 人 126	344.3	69.5	3.0	520	125	1.0
全 羅 北 道	韓國人 1,952	500.0	50.0	1.0	—	—	—
	日 人 22	90.0	35.0	—	—	—	—
全 羅 南 道	韓國人 3,496	300.0	20.0	3.0	—	—	—
	日 人 —	—	—	—	—	—	—
慶 尙 北 道	韓國人 2,270	447.0	20.0	1.0	10.3	5~60	10
	日 人 —	—	—	—	—	—	—
慶 尙 南 道	韓國人 2,655	150.0	平均 100	2.0	100	15	5
	日 人 19	—	普通 700	—	—	—	—
黃 海 道	韓國人 1,000	420.0	平均 59.8	3.0	220	54	13
	日 人 13	180.0	普通 143.0	113.0	85	74	6
平 安 南 道	韓國人 60	100.0	平均 38.0	10.0	300	平均 74	15
	日 人 —	—	—	—	—	—	—
平 安 北 道	韓國人 172	100.0	平均 20.0	5.0	3.5	平均 10	5
	日 人 —	—	—	—	—	—	—
江 原 道	韓國人 360	429.0	平均 25.0	1.0	450	50	10
	日 人 5	—	—	—	—	—	—
咸 鏡 南 道	韓國人 3	81.0	平均 43.0	10.0	—	—	—
	日 人 2	—	—	—	—	—	—
咸 鏡 北 道	韓國人 —	—	—	—	—	—	—
	日 人 —	—	—	—	—	—	—

資料：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p. 481—482.

(9) 度支部, 『土地調査參考書』第三號, pp. 115—116.

(10) 朝鮮總督府殖産局, 『小作農民に關する調査』, 1928, pp. 149—150.

③ 小作地의 改善

④ 租稅의 代納

그러나 이들 任務條項은 대체로 副次的인 것에 불과하였고 畝音의 終局的인 使命은 오로지 地主의 期待한 바 一定한 小作料를 遺漏없이 確保하려 함에 있었다.

이밖에 地主의 經濟的 또는 社會的인 欲求를 小作人을 통하여 가장 忠實히 履行하게 함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敢行한 行悖와 弄奸은 惡德地主의 所行을 훨씬 凌駕한 것이었으니 이들의 小作料 中間搾取量은 極度에 달하여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922年 당시의 畝音數 및 1人當 管理土地面積을 살펴 보면 表 1과 같거니와 그로부터 土地調查事業完了 이후의 大地主形成과 小作人關係에 의한 小作生産關係의 普遍化와 더불어 土地管理者이며 中間搾取者인 畝音의 뚜렷한 存立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3. 畝音의 選定

小地主는 地主가 스스로 小作地를 管理하는 일이 많았으나 中大地主 또는 遠隔地에 小作地를 가지고 있는 地主는 모두 畝音을 각지에 配置하여 地主에 代理해서 小作地를 管理하게 하였거니와 그에서 畝音의 選定方法은 다음과 같은 要領에 立脚하는 것이었다.

畝音의 選定方法에는⁽¹¹⁾ ① 親族을 選定하는 것, ② 地方에서 信用있는 小地主를 選定하는 것, ③ 小作人중 가장 信用있는 者를 選定하는 것 등이 있었다.

朝鮮에 있어서 大地主의 大部分은 그 所有地를 거의 小作地에 附하고 그들은 都市에 居住하는 慣習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들 大地主 또는 遠隔地에 있는 不在地主는 地方에 土地管理人을 두고 小作人을 指導 監督하게 한 것이나 畝音의 選定方法⁽¹²⁾은

- ① 地方의 有力者로서 상당한 資產信用이 있는 者 중에서 選定함
- ② 地主와 血族關係에 있는 者 혹은 近親者 중에서 選定함
- ③ 自身の 小作人 중에서 選定함
- ④ 地主의 昵懇者, 知友 등에서 選定하였다.

全羅南道 光州地方에서의 畝音의 人選方法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

- ① 財産과 地方의 信用을 兼備한 者
- ② 기타 農事에 透徹한 者
- ③ 所有耕地의 近傍에 居住하는 者
- ④ 親戚 등 關係있는 者

(11) 度支部, 前掲書, pp.100—101.

(12) 朝鮮農會, 前掲書, pp.281—282.

(13) 朝鮮總督府殖産局, 前掲書, p.154.

또한 忠淸南道地方에서의 舍音의 人選方法을 보면 ① 信用있고 資産있는 者 중에서 選定하거나, ② 舍音 또는 都舍音은 地主에 대한 信用이 두텁고 農事에 透徹한 者 중에서 選定하였다.⁽¹⁴⁾

舍音은 親族, 緣故者 또는 그 地方村內에서 가장 信用있는 者를 選定하여 委屬함이 一般的이었고 舍音 가운데는 專屬舍音이라 하여 1人의 地主의 土地만을 管理하는 者와 2人 혹은 數人의 地主로부터 小作管理의 委屬을 受任받은 者들도 있었다.⁽¹⁵⁾

4. 舍音의 報酬

舍音의 報酬는 그 支給方法과 額數가 地方과 慣習에 따라 多様하였으나 그 代表的인 경우를 들면 ① 小作料收納量에 대응하여 그 幾分을 받는 것으로 그 比率은 100分의 1 내지 100分의 5를 普通으로 하는 것, ② 自己가 小作하는 土地의 小作料를 輕減받는 것, ③ 一定 土地를 無償으로 耕作하는 것 등이 있었다.⁽¹⁶⁾

舍音의 報酬는 秋收期후에 一定의 報酬를 地主로부터 受領하는 것이지만 報酬支給方法 및 程度는 各地方마다 一定치 않으나 그 種類의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① 地主로부터 支給되는 것

㉞ 地味良好한 土地를 無償으로 小作하게 하는 것과(京畿, 忠南, 慶北)

㉟ 小作料 1割 以內의 現物을 地主로부터 支給받는 것 (京畿)

② 小作人으로부터 支出되는 것

小作料徵收의 경우 小作人으로부터 徵收되는 것으로서 그 比率은 小作벼 1石에 대하여 벼 5되로 함을 一般的으로 하였다(忠北, 忠南, 平南).

③ 地主小作人共同으로 支出하는 것

小作人 1戶에 대하여 地主로부터 벼 5되, 小作人으로부터 벼 5되를 收納하였다(京畿, 忠南).

江原道 春川地方에서의 舍音의 報酬는⁽¹⁸⁾ 地主土地의 一部分을 無料로 혹은 廉價로 借受하여 小作하는 慣習으로 具體化되어 있었고 全羅南道 光州地方에서의 報酬額⁽¹⁹⁾은 약 50石의 小作料徵收量에 대하여 2石 내지 1石이며 舍音自身이 小作을 겸하는 경우에는 위의 報酬 이외에 地主에 納付하여야 할 小作料를 싸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忠淸南道 鴻山地方에서의 舍音의 報酬額⁽²⁰⁾은 두 가지 種類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地主가 所

(14) 朝鮮總督府殖産局, 前掲書, pp. 154-155.

(15) 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1938, p. 335.

(16) 朝鮮總督府殖産局, 前掲書, pp. 150-151.

(17) 朝鮮農會, 前掲書, pp. 283-284.

(18) 朝鮮總督府殖産局, 前掲書, p. 152.

(19) 朝鮮總督府殖産局, 前掲書, p. 154.

(20) 朝鮮總督府殖産局, 前掲書, p. 155.

有하고 있는 田畝가운데 가장 優良한 土地를 小作하며 그로써 利益을 取得하게 하는 方法 이고 다른 하나는 賭租額의 1割을 小作人으로부터 徵收함으로써 그를 下舍音과 分配하되 그 比率는 舍音 3分の 2, 下舍音 3分の 1로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것은 舍音이 地主로부터 받는 報酬인 것이나 이로써 滿足하는 者는 거의 稀貴한 狀態이므로 大部分의 舍音은 그 地位를 利用하여 小作人을 苛斂誅求하여 그의 滿足을 充滿시켰다고 볼 수 있게 된다.

III. 舍音의 地域的 分布

舍音의 地域的 分布를 살펴보면 京城에 隣接되어 있는 中部地方인 京畿道, 忠清南道地方에 比較的 많이 集中되어 있었으며, 全羅南道, 全羅北道, 慶尙南道, 慶尙北道 등 南部地方에 偏在되어 있었으나 黃海道를 中心으로 한 北部地方에는 舍音이 적었다. 舍音은 全國에 걸쳐 分布되어 있었기 때문에 日帝下 農業은 舍音을 媒介로 한 小作生産關係가 全國의 地域的인 擴散속에서 實質化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부터 舍音存立의 普遍化와 더불어 그들에 의한 中間搾取가 具體化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舍音에 의해서 管理되어 있었던 管理小作地의 面積規模를 살펴 보면 1935年 당시에

表 2 舍音의 地域的 分布

道別	京 畿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1934	13,360	22.2	3,429	5.7	8,294	13.8	6,698	11.1	6,684	11.0	5,230	8.7	6,648	11.1
1935	16,890	25.4	3,953	5.9	9,345	14.0	6,472	9.7	6,846	10.3	5,474	8.2	7,187	10.8
1936	17,260	25.1	4,193	6.1	9,628	14.0	6,535	9.5	7,301	10.6	5,832	8.5	7,171	10.4
1937	16,768	24.3	4,341	6.3	9,349	13.5	6,853	9.9	7,642	11.1	6,114	8.9	6,908	10.0
1938	16,931	23.8	4,454	6.3	9,619	13.5	7,140	10.0	8,010	11.2	6,535	9.2	7,136	10.0
1939	17,163	24.0	4,523	6.3	9,580	13.4	7,326	10.2	8,110	11.3	6,630	9.3	7,154	10.0
道別	黃 海		平 南		平 北		江 原		咸 南		咸 北		計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1934	5,226	8.7	917	1.5	1,265	2.1	2,201	3.6	213	0.3	127	0.2	60,300	100.0
1935	5,512	8.3	950	1.4	1,293	1.9	2,327	3.5	238	0.4	137	0.2	66,624	100.0
1936	5,610	8.3	993	1.5	1,291	1.9	2,459	3.6	246	0.4	145	0.2	68,664	100.0
1937	5,646	8.2	1,204	1.7	1,266	1.8	2,531	3.7	254	0.4	147	0.2	69,023	100.0
1938	5,782	8.1	1,277	1.8	1,268	1.8	2,599	3.6	267	0.4	177	0.3	71,195	100.0
1939	5,770	8.1	962	1.3	1,274	1.8	2,648	3.7	264	0.4	180	0.3	71,584	100.0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 第一輯, 1940, p. 91.

表 3 舍音의 管理小作地面積

年度別	道 別				京 畿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1	9	3	5							
	1	9	3	5	198,625	37,024	97,165	115,718	133,328	66,127	104,563
	1	9	3	6	207,224	40,008	100,749	116,925	147,780	72,775	89,437
	1	9	3	7	202,080	42,530	100,664	125,235	163,167	101,291	69,256
	1	9	3	8	207,295	45,000	105,952	130,381	174,295	127,265	72,915
	1	9	3	9	217,073	47,888	110,801	137,431	156,082	130,200	75,468

年度別	道 別				黃 海	平 南	平 北	江 原	咸 南	咸 北	計
	1	9	3	5							
	1	9	3	5	179,375	20,516	24,126	40,298	5,826	2,418	1,025,115
	1	9	3	6	186,697	20,455	22,658	42,649	8,438	2,613	1,058,414
	1	9	3	7	190,912	23,425	22,294	47,531	9,086	2,128	1,099,595
	1	9	3	8	197,630	23,513	23,128	49,632	9,531	2,301	1,168,683
	1	9	3	9	155,813	20,435	23,340	51,190	9,845	2,402	1,136,972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 第一輯, 1940, pp. 91—92.

1,025,115町步에 달하여 있었고 그것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매년 漸增되어 1939年이후에 이르러서는 1,136,972町步에 달하여 있음을 위의 表 3에서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日帝下 植民地農業의 展開에 있어서 小作生産關係의 年次的 深化와 더불어 舍音存立이 強化되는 가운데 農民에 대한 橫奪이 加重化되었다는 裏證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注目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小作地管理面積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京畿道を 비롯하여 全南, 全北, 忠南, 慶北 및 慶南의 順으로 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밖에 舍音의 出身地關係 및 職業關係를 살펴 보면 舍音의 出身地關係에 있어서는 그 地域住民이 絶對적으로 많고 職業關係面에서 그의 內容을 살펴보면 農業者가 大部分임을 알 수 있게 된다.

表 4 出身地別 舍音內譯

出 身 地 別	地 域 住 民	非 地 域 住 民
舍 音 總 表	26,025	7,170

資料：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1938, p. 336.

表 5 職業別 舍音內譯

職 業 別	農 業 者	*非 農 業 者
舍 音 總 表	30,493	2,702

資料：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1938, p. 336.

*非農業者란 商業, 金融業, 公吏代書業 등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한편 農業者의 構成을 살펴보면 小作農階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地主이며 自作農 그리고 自作兼小作農의 順으로 되어 있음을 다음의 表6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表 6 農業者階級別로 본 舍音構成關係

農業者別	地 主	自 作 農	自作兼小作農	小 作 農	管理專業其他
總 表	1,136	8,497	5,330	14,533	1,951

資料：朝鮮總督府，『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p.120.

IV. 舍音存立의 舍蓄

李朝末期의 封建時代 및 韓日合併 이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地主制度下에 舍音의 存立⁽²¹⁾을 明白하게 보게 된 것이나 韓日合併 이후 土地調査事業을 主軸으로 하여 形成된 大地主와 小作人關係가 顯著化됨에 따라서 大地主와 小作人의 媒介者이며 土地管理者인 舍音의 存立은 普遍化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小作管理를 위하여 舍音을 配置함이 慣例가 되어 있었고 地主는 대부분 京城 其他都會地에 居住하여 小作地所在農村에는 舍音으로 하여금 小作地의 管理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더욱 舍音下에 差宅 또는 探傭軍 혹은 庫直 등을 두어 小作地의 作況調査 및 小作料收納의 事務, 기타 土地 및 小作人을 監督하게 함이 하나의 慣例가 되어 있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日帝下 小作料의 算定方式을 보면 普通小作의 경우 이른바 定租法, 打租法 및 執租法의 三者가 併存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것이나 대체로 地主의 一方的 便宜에 의하여 選擇되고 있었던 小作料 收納額의 決定方式의 것이었다.

그 가운데 定租法은 當初 日本人農場이나 一部 韓國人不在地主間에 實施된 慣例이었고 執租法은 주로 日本人大地主에게 널리 施行한 바 되어 있었으며 韓國人一般에 있어서는 打租法이 支配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각기 多少의 性格的인 差異와 時代的 變遷을 보이고는 있었으나 다 같이 小作農收奪의 苛酷한 手法이 되어 있었음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에컨대 打租法은 收穫量의 折半分配式이 普通이었으나 租稅公課의 負擔이 小作農에 歸屬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고 定租 또한 이에 준하여 平年作의 5~6割로서 策定되는 예가 一般的이었다. 한편 執租는 대개 不在地主의 現地管理人인 舍音의 作況踏査에 의한 評價方

(21) 『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京畿道, 忠清道, 江原道篇), p.501.

式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결국 一般의 小作料率에 畝畝의 挾雜을 添加한 것이 小作料의 實質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定租, 打租 및 穀租 등 小作料의 徵收方式이나 그들에 의한 分配率만을 볼 것이 아니라 實物의 運搬費 및 包裝費 등 附隨的 支出이나 그밖에 強要된 地代的 負擔을 빠짐없이 보는 것이 重要하다 할 수 있다.

예컨대 小作人의 家事勞役, 土地改良費, 公課負擔 등 條件을 考慮하여 살펴 보는 姿勢가 重要하고 또한 여기서 一律的으로 小作料라 하지만 地主가 實地 收納하는 現物 또는 現金에는 小作料 이외에 위의 附隨的 諸負擔이 小作人에 대하여 賦課되는 加重性을 發見하게 된다. 이것은 地主의 土地兼併이 進行됨에 따라서 畝畝의 介在와 더불어 그들에 의한 榨取關係가 加重的으로 普遍化되어 있었던 事實에서 뚜렷하게 된다.

이에 地主와 小作人의 小作關係에 있어서 그의 管理者이며 中間榨取者인 畝畝의 存立이 小作關係에 미치는 惡影響과 더불어 小作農民을 害毒케 하며 農業發展을 沮害하고 있는 條件이 되어 있음을 알게되는 것이나 이를 畝畝가 集中的으로 分布된 京畿道, 忠淸南北道, 全羅南北道 그리고 慶尙南北道の 南部地方에서의 畝畝存立의 弊害에 대한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道地方의 畝畝弊害로는⁽²²⁾

① 私利私情에 의하여 함부로 小作人을 變更하는 일이 許多하여 小作地分配의 均衡을 喪失하게 하고 있다.

② 小作人의 取扱에 있어서 평소에 贈與物 기타의 情實에 의하여 差別待遇를 하고 있다.

③ 小作人을 私役に 服役하게 하고 있다.

④ 小作料를 任意로 增徵하고 있다.

⑤ 地主의 歡心을 사기 위하여 小作人을 榨取하며 虐待하고 있다.

⑥ 地主로 부터의 約定報酬 이외에 各種名目으로 收益을 얻고 있다.

忠淸北道地方에서의 畝畝弊害로는⁽²³⁾

① 管理土地중 肥沃한 土地를 自己報酬畝으로 하고 不良地를 小作하게 하는 傾向이 있다.

② 小作權移動을 濫用하고 있다.

③ 小作料에 差額을 設定하여 (約定小作料 및 斗量付) 利得을 얻고 있다.

④ 小作人에게 無償勞役을 強要하고 있다.

(22) 朝鮮農會, 前揭書, p. 483.

(23) 朝鮮農會, 前揭書, pp. 483—484.

忠淸南道地方의 舍音弊害로는⁽²⁴⁾

- ① 私利私慾에 沒頭하여 利慾을 恣行한다.
- ② 小作權移動을 濫用하고 있다.
- ③ 小作人에게 各種의 雜役을 課하고 있다.
- ④ 地主에 대한 小作料를 不正하게 處理하고 있다.

全羅北道地方의 舍音弊害로는⁽²⁵⁾

- ① 不正手段을 恣行하고 있으며 私利를 도모하고 있다.
- ② 私用의 目的으로 小作人을 無償使役하고 있다.
- ③ 舍音의 不正行爲 및 不當利得은 小作人을 惡化시키고 있다.

全羅南道地方에서의 舍音弊害로는⁽²⁶⁾ 舍音은 私利私慾을 위하여 小作人을 擄取虐待한다.

즉

- ① 不當하게 金品을 徵收한다.
- ② 無償勞役을 課한다.
- ③ 小作料를 增徵한다.
- ④ 小作權을 移動한다.

慶尙北道地方의 舍音弊害로는⁽²⁷⁾

- ① 小作料納付의 경우 小作人으로부터 每 1石에 대하여 七升 이상의 手數料를 取得한다.
- ② 執穗의 경우 酒食을 小作人에게 負擔시킨다(反當 四十錢 이상).

慶尙南道地方의 舍音弊害로는⁽²⁸⁾

- ① 小作權을 自由로 移動하고 있다.
- ② 私腹을 위하여 小作人을 擄取하고 있다.

舍音의 弊害⁽²⁹⁾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指摘된 內容도 있다.

① 小作人을 任意로 變更하고 自己의 親戚, 知己 등에 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小作人의 生活을 威脅하고 있다.

② 地主와 契約하는 이외에 故意로 小作料를 높이고 또는 小作料徵收의 경우 高의로 數量을 增加시키고 있다.

(24) 朝鮮農會, 前掲書, p. 484.

(25) 朝鮮農會, 前掲書, p. 485.

(26) 朝鮮農會, 前掲書, p. 485.

(27) 朝鮮農會, 前掲書, p. 486.

(28) 朝鮮農會, 前掲書, p. 486.

(29)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1944, pp. 528-529.

- ③ 徵收한 小作料를 賣却하는 경우에 一定場所까지의 運搬을 負擔시키고 있다.
- ④ 自己가 徵收한 小作料보다도 더 나쁜 벼를 地主에게 納付하고 있다.
- ⑤ 小作料徵收의 경우 各種各樣의 名目으로 小作人으로부터 金品을 收取하고 있다.

또한 畝音의 弊害에 대하여 指摘된 다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 ① 小作料를 增加시키고 있다.

즉 小作料收納量의 一部分을 報酬로서 支給받는 畝音은 報酬增加를 기하기 위하여 小作料를 增徵하는 것이다.

- ② 恣意로 小作人을 變更시키고 있다.

즉 不定期小作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더우기 畝音에 小作契約의 解除權이 附與되어 있음으로써 그의 權限을 濫用하며 小作人의 贈與의 多寡에 依存하여 小作人을 變更하게 한 것이다.

- ③ 農業發達을 沮害하고 있다.

즉 小作人을 誅求하며 小作契約解除의 不安을 주어 小作人의 土地改良 其他施設을 행하는 餘裕를 주지 않아 營農意慾을 減殺시킬 뿐만 아니라 優良品種의 普及을 妨害함으로써 農業發達을 스스로 沮害한 것이다.

위의 內容에서 畝音은 스스로 小作農民을 無慈悲하게 直接的으로 收奪할 뿐만 아니라 中間搾取者로서의 存在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畝音은 單純한 收租 뿐만 아니라 各種의 賦役을 小作人에게 強要하였던 存在로서 그 弊害는 실로 큰 것이었으며 그것은 小作人에 대해서는 물론 地主에게도 적지 않는 影響을 끼쳐 農業發展에 하나의 沮害要因의 契機로서 具體化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畝音은 小作料 이외에 小作人으로부터 手數料를 徵收하며 贈與를 強制하고 小作人으로 하여금 私用の 無償勞動에 服役하게 하는, 實質上的 小作人負擔을 加重시켜 온 存在로서 小作人의 經濟的 地位向上이나 發展을 沮害케 하는 痛的 存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朝鮮에 있어서 畝音의 存立이 小作關係에 미치는 影響은 지대한 것으로서 朝鮮에 있어서 小作慣行 중 痛的 存在로서 稱號되어 있었다」⁽³¹⁾와 「畝音 其他 小作地管理者에 基礎한 弊風은 深刻한 것이었고 따라서 農地令發布의 主要目的도 이 弊風의 矯正에 있었으며 이 弊風은 朝鮮에 있어서 小作慣行의 痛的 存在이었다 云云」⁽³²⁾에서 明白히 알 수 있게 된다.

(30) 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pp. 338-339.

(31) 朝鮮農會, 前掲書, p. 483.

(32)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1944, p. 655.

또한 「京城의 富豪는 그 大部分이 소위 不在地主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現象은 비단 京城에 한한 것이 아니고 全朝鮮 各都市가 모두 大同小異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 不在地主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社會問題로는 대개 세가지를 들 수 있으니 農村疲弊問題, 邑面財政不健全問題, 舍音制度에 의한 小作料過重問題가 그중 重要的 것이고 이상 3大弊害 중에서도 가장 重大하고 切迫한 問題요 따라서 世人의 가장 큰 關心을 끄는 問題는 역시 舍音制度에 의한 過重小作料 徵收問題이다. 舍音制度란 만드시 不在地主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不在地主가 생긴 후로 그 數가 激增되었으며 또 地主의 不在를 틈타서 그들이 더욱 橫暴를 恣行하는 사실도 默過하여 凶을 程度가 아니거니와 원래가 舍音이란 小作人에게 대하여 中間搾取하는 存在로 되어 왔다 云云」⁽³³⁾에서 明白하다 할 수 있다.

모름지기 小作問題의 現實的 條件인 즉 결코 小作料의 高率性에 限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小作期間의 設定, 小作料의 徵收方法, 運搬費用, 小作契約의 締結方式 등에서 不合理性은 얼마든지 있었다. 우선 日帝下 小作期間을 보면 當初 普通 1年の 口頭契約이 一般의이었으나, 小作期間의 決定與否에 關係없이 小作人의 背信行爲가 없는 한 이의 契約은 繼續되는 것이 普通이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地主 및 舍音의 制約에 의하여 혹은 強力한 그들의 權利에 의하여 또는 私情私慾에 의하여 그 解除를 그들의 自由自在로 行使하였다」⁽³⁴⁾라는 內容, 그리고 「朝鮮의 小作制는 世界에 類例를 볼 수 없을 만큼 不合理를 極한 것으로서 農民은 地主와 舍音을 위하여 不斷한 苛斂誅求 밑에서 남김없이 搾取를 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小作條件의 不合理性이 드디어 小作農民으로 하여금 悲鳴을 울리게 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小作爭議로서 昇華되지 않을 수 없는 運命에 놓이게 되었다」⁽³⁵⁾는 事實 등에서 舍音存立의 橫暴性을 充分히 알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1922年 서울에서 結成된 小作人相助會를 筆頭로 하여 朝鮮農民總同盟 그리고 各地方에 組織된 小作人組合이나 農民組合 등에서의 小作關係에 대한 是正條件⁽³⁶⁾ 가운데 舍音制度의 廢止를 提示하고 있는 內容에서 小作爭議의 發祥의 根源의 一面과 더불어 그들의 橫暴性을 充分히 찾아볼 수 있게 되며 同時에 舍音의 橫暴性에 대한 內容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서도 뚜렷하다 할 수 있다. 즉 「舍音에는 都舍音과 該舍音이 있었고 前者는 地主로부터 小作地의 管理를 직접 委任받는 者이며, 後者는 都舍音으로부터 小作地의 管理를 다시 委任받은 者로서 地主와의 關係를 보면 複代理人의 關係가 있었다. 이들 舍音은 地主의 代

(33) 朝鮮日報, 1939年 4月 12日字 不在地主의 土地管理問題의 社說.

(34) 朝鮮總督府 農林局編,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3.

(35) 澤村康, 『農業政策』(上), 1932, p. 277.

(36)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p. 531.

理人으로서 小作地의 作況調查, 小作料의 收納事務, 小作地 및 小作人의 監督 등이 그들의 主要任務이었으나 그러나 舍音은 이러한 本來的인 任務보다도 小作人을 여러가지 形態로 收奪하는데 더욱 忠實하였다. 이리하여 小作人에 대한 舍音의 행패는 極甚한 것이었다. 여기서 舍音의 行패를 들어보면 첫째 舍音은 小作料를 不當하게 붙여 그 一部分을 着服하였으며 둘째 膝貫라 하여 小作人으로부터 約定 이외의 物品을 徵發하였으며 셋째 小作權이 交替될 때마다 作脾送致料라 하며 金品을 要求하였으며, 넷째 小作人을 隨時로 雜役に 使用하였다 云云⁽³⁷⁾과 또한 「農民을 害毒케 하며 農業發展을 沮害케 한 重大要因이 되어 있던 不良舍音을 善導하기 위하여 舍音의 農事講習會를 開催한 바 있다 云云⁽³⁸⁾에서 舍音存立이 農業發展 및 農家經濟向上을 沮害케 하는 基本條件이 되어 있었음을 充分히 알 수 있게 된다.

V. 要 約

① 舍音은 地主의 代理人으로서 그의 經濟的 또는 社會的 欲求를 小作人의 搾取를 통하여 가장 忠實하게 履行하게 한 存在이고 그가 小作人에게 敢行한 行悖와 作奸은 惡德地主의 所行을 훨씬 凌駕하는 癌的 存在이다.

② 不在地主의 土地管理者이며 小作人의 中間搾取者로서의 舍音의 橫暴와 籠絡은 小作爭議의 發祥의 根源이 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小作爭議에 따른 小作條件의 一環으로서 舍音制度의 廢止를 強力히 希求한 바 있었다는 事實에서 反證되어 있다.

③ 舍音制度는 하나의 小作地管理制度로서 日帝下에 있어서 重要的 農村制度임과 同時에 小作制度 가운데 하나의 求心點이 되어 있었던 制度이다.

④ 舍音은 小作料 이외에 小作料의 收納量에 따라 小作人으로부터 手數料를 徵收하며 贈與를 強要하고 小作人을 私用的 無償勞動에 服役케 하는 實質上의 小作人負擔을 加重시켜 온 存在이다.

⑤ 舍音의 地域的 分布는 京城에 隣接되어 있는 中部地方인 京畿道, 忠清南北道地方에 比較的 많이 分布되어 있고 이어서 全羅南道, 全羅北道, 慶尙南道, 慶尙北道 등등 南部地方에 分布되어 있는 順으로 되어 있으나 黃海道의 北部地方에도 舍音의 地域的인 分布가

(37) 崔虎鎮, 『近代韓國經濟史』, 1973, p. 105.

(38)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1944, p. 311.

있지않아 있어 畝音은 全國을 걸쳐 모두 分布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⑥ 畝音存立의 性格은 小作人의 誅求, 小作料增徴 그밖에 小作契約解除의 不安속에서 小作人의 土地改良 및 營農施設投資에 의한 營農意慾을 直接的으로 減殺시키는 契機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農業發展 및 農家經濟向上을 沮害하게 하는 癌的 存在이었다는 事實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된다.